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 20 선고 2021가합10035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피고 1. A 주식회사

2.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신

담당변호사 이준민

변론 종결 2021. 11. 25.

판결 선고 2022. 1. 20.

주 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1 목록 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주식회사 C와 피고 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1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A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가. 주문 제1항과 같다.

나.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별지1 목록 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D(E 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으로 공탁된 142,000,000원에 관하여 피고 A 주식회사가 대한민국(소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탁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취지를 통지하라.

2. 가. 주문 제2항과 같다.

나. 피고 B은 C에게 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D(E 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으로 공탁된 1,000,000,000원에 관하여 피고 B이 대한민국(소관: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탁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취지를 통지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2015. 3. 18.자 신용보증약정 가) 원고는 2015. 3. 18. 주식회사 C과 사이에 C이 주식회사 F(이하 'F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시설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채무에 관한 보증원금을 1,822,500,000원으로, 보증기간을 2015. 3. 18.부터 2025. 3. 17.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1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F은행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C은 같은 날 F은행으로부터 2,02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2016. 4. 28.자 신용보증약정 가) 원고는 2016. 4. 28. C과 사이에 C이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채무에 관한 보증원금을

720,000,000원으로, 보증채무최고액 936,000,000원으로, 보증기간을 2016. 4. 28.부터 2017. 4. 27.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2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기업은행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C은 같은 날 기업은행으로부터 9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2차 신용보증약정은 2018. 6. 14.에 보증원금이 664,000,000원으로, 보증채무최고액이 863,200,000원으로 각각 변경되었으며, 신용보증기간이 계속 연장되어 2019. 6. 26.에는 2020. 6. 26.까지로 변경되었다.

3) 2016. 8. 31.자 신용보증약정 가) 원고는 2016. 8. 31. C과 사이에 C이 F은행으로부터 일반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채무에 관한 보증원금을 464,000,000원으로, 보증기간을 2016. 8. 31.부터 2017. 8. 3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3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F은행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C은 같은 날 F은행으로부터 58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3차 신용보증약정은 2019. 8. 29.에 보증원금이 409,600,0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신용보증기간은 계속 연장되어 2020. 2. 14.에는 2021. 2. 26.까지로 변경되었다.

4)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각 약정에 따라 C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고(각 신용보증약정 제10조 제1항),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아래 각 대위변제일부터 현재까지 연 8%이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발생

1) 이 2020. 4. 무렵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연체함에 따라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상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1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0. 9. 23. F은행에게 C의 채무 299,681,510원(= 원금 294,500,000원 + 이자 5,181,51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2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0. 9. 21. 기업은행에게 C의 채무 528,715,616원(= 원금

519,355,895원 + 9,359,72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는 3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0. 9. 23. F은행에게 C의 채무 416,387,048원(= 원금 409,600,000원 + 이자 6,787,04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5) 원고는 2020. 9. 23. C로부터 625,082원을 회수하였는데, 위 회수금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은 137원(= 625,082원 × 0.08 × 1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다. C과 피고들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1) C은 2020. 3. 5. 피고 A 주식회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A에게 이를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2020. 3. 5. 접수 제15150호로 채권최고액 142,000,000원, 채무자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C은 2020. 3. 12. 피고 B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2020. 3. 12. 접수 제16317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 채무자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및 배당표 작성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D, E(병합)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어 위 경매절차에서 2021. 6. 24. 근저당권자인 피고 A에게 142,000,000원, 피고 B에게 1,000,000,00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2) 원고는 2021. 4. 28. 위 법원 2021카단100747호로 피고들의 배당금청구권에 대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C에 대한 대위변제자로서, C에 대한 채권 1,344,269,317원(= 구상금채권 원금 1,245,235,856원 + 지연손해금 94,585,149원 + 대지급금 4,448,312원) 중 1,031,161,478원을 배당받았다. 이로써 원고의 C에 대한 잔여채권은 위 배당일인 2021. 6. 24. 기준으로 구상금채권 원금 313,107,839원(= 1,344,269,317원 - 1,031,161,478원)이다.

마. 원고의 C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

원고는 C와 G을 상대로 위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20차전21747호), 위 법원은 2020. 12. 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명령은 2021. 2. 2. C에게 송달되어 2021. 2. 17. 확정되었다(채무자들은 C와 G을 말하고, 채권자는 원고를 말한다).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별지 청구취지 기재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라.

별지

1. 금 1,245,235,856원

2. 위 1항 금원 중 528,715,616원에 대하여는 2020. 9. 21.부터, 715,443,476원에 대하여는 2020. 9. 23.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 독촉절차 비용 533,9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17, 18,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6, 7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여부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이 가까운 장래에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실제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위 각 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은 2020. 3. 5. 체결되었고,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은 2020. 3. 12. 체결되었다.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은 이미 체결되어 있었다.

○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C은 2020. 3. 무렵 채무초과 상태였고, 2020. 5. 7.경 원고로부터 2020. 4. 24.자로 신용보증 부실이 발생함에 따라 법적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갑 제6호증). 그리고 기업은행은 2020. 6. 9. 원고에게 2020. 5. 19.자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갑 제9호증).

○ 원고는 2020. 9.경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현실화되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나) 회사의 채무초과 상태란 회사가 실제 부담하는 채무 총액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기재된 명목상 부채 및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27847 판결 참조).

2) 판단 가) 채무초과 여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5호증, 을가 제4호증, 을나 제2,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은행, H기관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사상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인 2020. 3.경 C의 적극재산은 16,678,467,190원이고, 소극재산은 19,884,282,873원이므로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이 특정 채권자인 피고들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별지1	순번1(부산 사상구 I)	3,006,213,000	F은행 대출금2)	13,980,276,729
순번2(위J)	3,006,213,000	기업은행 운전자금	396,000,000	
순번3(위 K)	7,367,291,400	기업은행 구매자금	789,000,000	
순번4(위 I, J 지상 사무실)	586,533,150	기업은행 신용카드	12,000,000	
순번5(위 I, J 지상 L동)	219,640,680	M은행 운전자금	490,000,000	
순번6(위 I, J 지상 N동)	235,108,440	M은행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12,000,000	
순번7(위 K 지상 O동)	819,737,520	P보증보험 지급보증	391,000,000	
별지2 기계기구	1,437,730,000	Q 금융리스	202,000,000	
-	-	R 금융리스	82,000,000	
-	-	S 금융리스	97,000,000	
-	-	T 할부금융	41,000,000	
-	-	피고 A 대여금	141,331,929	
-	-	U(주)추심금3)	77,386,837	
-	-	V(주) 추심금	77,386,837	
-	-	W 공정증서	1,059,000,000	
-	-	W 물품대금	82,985,452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구금	200,000,000	
-	-	근로복지공단 채당금	274,575,160	
-	-	북부산세무서 부가가치세	79,239,310	
-	-	(주)X 청구금	222,090,844	
-	-	부산 사상구청 지방소득세 체납	31,963,720	
-	-	부산 사상구청 점용료 체납	5,462,270	
-	-	Y카드 청구금	29,751,772	
-	-	Z 임금	21,342,554	
-	-	(주)AA 청구금	34,522,402	
-	-	AB(주) 청구금	54,967,057	
-	-	피고 B	1,000,000,000	

별지1	순번1(부산 사상구 1)	3,006,213,000	F은행 대출금2)	13,980,276,729
합계	16,678,467,190	합계	19,884,282,873	

나)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C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무 33,407,590원도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갑 제15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위 채무는 2020. 4.부터 2020. 5.까지 고지분에 관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인 2020. 3.경에는 위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위 각 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채권자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때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3다904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무렵 위 각 부동산 및 별지2 기재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기계 등'이라 한다)에 관한 F은행의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13,980,276,729원인 사실(F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제12, 13, 14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기계 등의 시가는 16,678,467,190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15,240,737,190원(그 중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13,379,717,400원²⁾)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기계 등에 관하여 F은행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일에 앞서 선순위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안분액은

12,775,138,209원(= 13,980,276,729원 × 15,240,737,190원 / 16,678,467,19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이 사건 토지가 부담하는 안분액은 11,215,188,402원(= 13,980,276,729원 × 13,379,717,400원 / 16,678,467,19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적어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2,485,598,981원(= 15,240,737,190원 - 12,755,138,209원), 이 사건 토지에는 2,164,528,998원(= 13,379,717,400원 - 11,215,188,402원) 상당의 담보가치가 남아 있었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B은, C이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면서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신규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비록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신규자금의 유입 없이 단지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29215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2020. 3. 3.경 'C은 2020. 3. 3.까지 B에게 이자를 포함하여 530,000,000원을 변제 못하였음을 확인함. 530,000,000원에 대한 변제기는 두 달 뒤로 하고 이자는 연 24%로 함. 단 이자 및 원금을 지급 못할 시 바로 변제를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라는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인 2020.

3. 12.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던 점, ② 피고 B은 2020. 3. 11. C에게 신규자금 3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돈은 C이 아니라 AC(C의 이사)에게 입금되었던 것으로(을나 6호증의 2 제21면) 이를 C에 대한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이 C의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로 신규자금의 유통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들이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이 선의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1) 피고 A

○ 피고 A은 2018. 2. 20. C과 철강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C에게 철강재를 공급하였는데, 2019. 12. 2. 기준으로 C로부터 철강재 대금 141,331,929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고(을가 제3호증), 2019. 11. 29. 이후 C에게 철강재를 추가로 공급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 피고 A은 2020. 2. 20. C로부터 위 돈을 2020. 3. 3.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을가

제5호증의 1)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AC으로부터도 위 돈에 대한 연대보증 각서를 받았으나(을가 제5호증의 2), C은 위 일시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A은 C의 자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 A은 2020. 3. 5. C과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D 주식회사가 2020. 2.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가 2020. 3. 2. 위 가압류 집행이 해제된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 B

○ 피고 B은 2019. 10. 25. C에게 변제기 3개월 뒤, 이자 연 24%로 정하여 25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을나 제6호증의 3), 당시 C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지 않았다.

○ 피고 B은 일부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앞서 본 것과 같이 2020. 3. 3. C로부터 530,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았고(을나 제6호증의 4), 9일 뒤인 2020. 3. 12.에야 C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 B은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2020. 3. 5.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앞서 본 AD 주식회사의 가압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 피고 B은 AC으로부터 C의 외상매출금명세서, 재고현황, 설비리스트 등을 교부 받아 이를 검토하여 C에게 자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자료들이 실제 C의 재무상태를 반영하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 자료를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될 무렵에는 C의 자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들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 및 위 각 채권의 양도통지를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대한민국이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배당액인 142,000,000원 및 10억 원을 각 공탁한 사실, 이로 인하여 피고들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보유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효량

판사김해마루

판사김도완

별지

1) 별지1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2 기재 기계기구의 금액은 2020. 10. 9.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인 2020. 3.무렵에도 그 금액이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2) 13,379,717,400원 = 3,006,213,000원 + 3,006,213,000원 + 7,367,291,400원